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76
------	-----

2019. 4. 25.  
기 획 경 제 위 원 회

## I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9)상정,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강태웅)

### 1. 제안이유

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422명에서 18,472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50명)
  - (1) 박물관 건립·운영, '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재난상황관리 감찰기능 강화, 공무원·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35명)
  - (2) 시립대학교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15명)
  
-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7명 감축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422명에서 18,472명으로 50명 증원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 박물관과 18명, ▷ 서울공예박물관 7명, ▷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인력 보장 2명, ▷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 5명, ▷ 공무원·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3명,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 교원 증원 15명을 보장하고,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과 일반직 5급 이하 정원(7명)을 상계 조정하는 것임.

#### 〈정원 조정 내역〉

구분	총 정원	정무	일반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현행	18,422	2	10,451	7	23	18	5	242	10	10,146	37	376	24	7,027	505
변경후	18,472 (+50)	2	10,475 (+24)	7	23	18	5	242	10	10,170 (+24)	37	387 (+11)	24	7,027	520 (+15)

#### 나. 분야별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1) 박물관 건립·운영 인력보강

- 신규 박물관·미술관의 개관시기에 맞춰 관리·운영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박물관과에 18명, 서울공예박물관 7명 등 모두 25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음.

〈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 〉

사업별	규모(m <sup>2</sup> )	건립예산 (백만원)	주요공정(완료시기)				개관
			건축설계	전시설계	건축공사	전시공사	
총액		407,768					
서울생활사박물관	6,919	48,545		'19.5.	'19.4.	'19.5.	'19.7.
서울우리소리박물관	1,385	21,258		'19.4.	'19.6.	'19.9.	'19.10.
서울공예박물관	10,590	180,401		'19.12.	'20.2.	'20.4.	'20.5.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5,594	31,985	'18.12.	'20.11.	'21.9.	'21.11.	'21.12.
삼청각한국음식문화공간	1,150	미정	'21.1.	'21.6.	'21.12.	'21.12.	'21.12.
로봇과학관	6,305	30,759	'19.12.	'22.6.	'22.6.	'22.6.	'22.6.
서서울미술관	7,000	28,266	'20.10.	'22.6.	'22.11.	'22.11.	'22.12.
서울사진미술관	6,109	24,638	'20.5.	'22.6.	'22.9.	'22.11.	'22.12.
통합수장고	9,007	41,916	'21.3.	-	'22.11.	-	'22.10

- 이 같은 인력수요는 ‘박물관·미술관 조직진단 및 설계 컨설팅’(2019.3~6) 결과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목표 개관시기에 맞춰 콘텐츠 수집, 전시설계·전시물 제작·설치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부족한 현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 시설별 증원사유를 보면, ▷ 서울생활사박물관(5명)은 관리 공간 확대, ▷ 서울우리소리박물관(2명)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 삼청각한국음식문화공간(2명)은 한식문화관 건립을 위한 신규 증원, ▷ 서서울미술관(3명)과 서울사진미술관(2명)은 현원부족, ▷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4명)과 서울공예미술관(7명)은 개관(각각 2021년 12월, 2020년 5월)에 따른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다만,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의 경우는 건축설계공모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개관시기(2022. 12)도 충분하여 이번에 시급히 인력 충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 현업 부서에서 현원 확보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더 긴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인력배분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2)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인력보강

- 서울시는 평양과 함께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각종 심사(2017.7~11), 시민유치준비위원회 구성(2019.6),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총회(2020.11) 등에 대비하기 위해 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음.
-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 이후 반세기만에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조직(체육정책과 올림픽추진팀)을 신설(현원 2명, 순증 2명)하고, 이를 통해 각종 심사와 행사 준비, 남북 공동개최 추진 등에 대비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서울시가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2년)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다분히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조직 신설이 아닌지 의문시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간 미래 인력수급을 전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sup>1)</sup>인 바, 이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정밀한 인력운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3)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

- 서울시는 정부(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에 따라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운영 지침’(2018. 4)을 통보해옴에 따라 안전총괄실에 안전감찰팀(5명 증원)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불법행위, 안전무시 관행, 부실 안전점검과 부조리 등의 고질적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시·자치구·산하기관의 안전 분야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안전감찰 조직 신설은 화재·공사장 사고 예방, 안전 분야의 재난 관리 의무위반 방지, 안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등 감찰 기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② 시·도지사는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 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을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4) 공무원·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 공무원·공공안전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공공안전 조사팀(3명 증원)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은 1,979명, 공공안전관의 인력은 50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의 비위행위 조사 대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조사, 징계처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사용(소속)부서에서 조사·처분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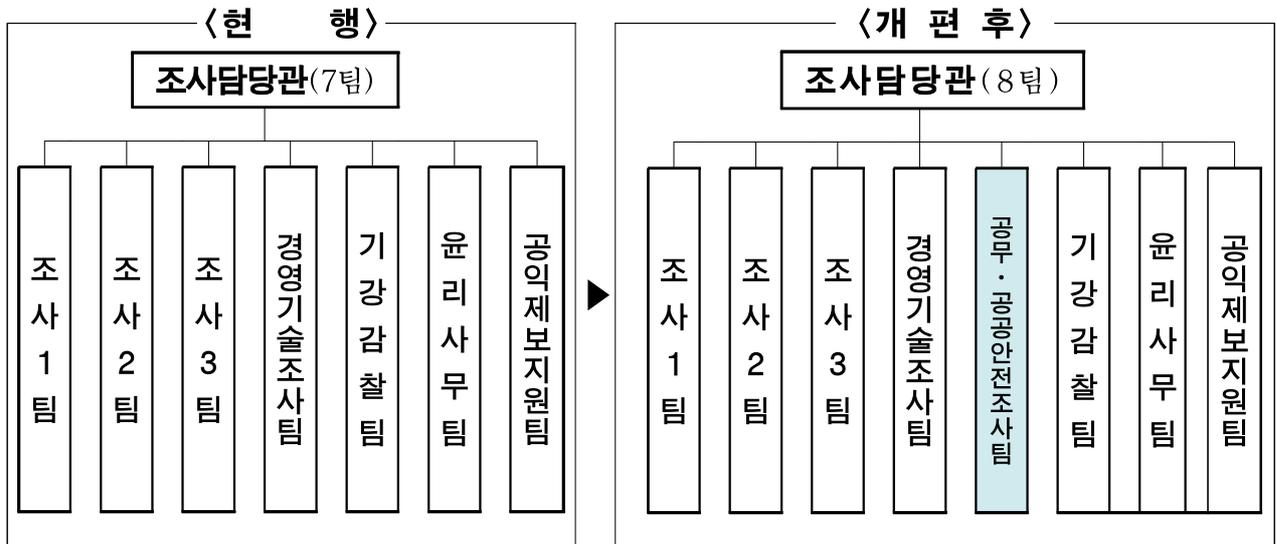
#### 〈공무원·공공안전관의 인력 현황〉

(단위 : 명, '19. 1. 1. 기준)

구분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공무직	1,979	298	251	1,420	10
공공안전관	505	76	27	401	1

※ 공무직 : 일반종사원(264), 환경정비원(477), 도로보수원(75), 시설정비원(375), 시설청소원(441), 시설경비원(273), 대민종사원(74)

- 따라서 조사전담팀 신설은 공무원·공공안전관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는 물론, 비위근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5) 시립대학교 교원 증원

- 시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전임 교원 확보를 향상을 위해 모두 15 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 HK(인문한국) 사업 종료에 따라 대학회계교수(정년보장트랙 교수)의 전임교원 전환을 위한 증원(4명),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첨단 학문분야 증원(6명), ▷ 사회공헌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토목공학, 교육대학원 교원 증원(3명), ▷ 융합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증원(1명), ▷ 교육부 등 대내외 대학 평가 대비 교원확보(1명) 등임.
-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적정 교원을 확보해야 함.

### 〈시립대 전임교원 현황〉

구 분	합 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교원확보율
교육부 기준정원(A)	491	205	51	199	36	
시립대 정원(B)	435	192	48	163	32	88.6%(B/A)
시립대 현원(C)	421	191	50	148	32	85.7%(C/A)

※ 교육부 기준정원 491명은 학생수 편제대비 정원임

#### 〈교육부 기준 정원 산정 :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 대학(교육대학 제외)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아래 표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교원1인당 학생수	25	20	20	20

-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시립대학교의 교원 기준정원은 491명으로, 현재의 정원(435명) 보다 56명의 교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함.
- 현재, 시립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정원기준 88.6%)은 주요 국립 대학(서울대 132.56%)이나 경쟁 사립대학(고려대 97.35%, 경희대 93.94%) 보다 낮은 수준임.

### 〈주요 국립 및 사립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비교〉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단위 : 명, %)

대학별	학생 편제정원(A)	교육부 법정정원(B)	교원현원 (C)	교원1인당 학생수(A/C)	교원확보율 (C/B×100)	비 고
<b>서울시립대</b>	<b>10,818</b>	<b>491</b>	<b>421</b>	<b>25.69</b>	<b>85.74</b>	공립
서울대	30,956	1,680	2,227	13.9	132.56	국립
성균관대	25,046	1,175	1,459	17.17	124.17	사립
연세대	31,204	1,561	1,696	18.4	108.65	사립
제주대	11,778	586	638	18.46	108.87	국립
고려대	31,233	1,470	1,431	21.83	97.35	사립
경희대	29,647	1,535	1,442	20.56	93.94	사립
경상대	16,531	815	811	20.38	99.51	국립
전남대	22,111	1,172	1,099	20.12	93.77	국립
부산대	30,165	1,610	1,340	22.51	83.23	국립
서강대	12,894	560	411	31.37	73.39	사립

-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 비율도 국공립대 평균(2018년 62%) 보다 낮은 56.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전임교원 강의비율〉

(단위 : 학점, %)

구분	개설학점	전임교원 담당학점	전임교원 강의비율
2018년	7,500	4,204	56.1

※ 국공립대 평균은 65.4%(2016년 기준)로 시립대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 2018년 대학정보공시

- 전임교원의 적정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대내외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전임교원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할 것임.

### (6)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른 상계 조정

-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7명을 감축하고자 함.
- 이는 2013년 폐지된 기능직군인 ‘사육운영직’의 자연감소 정원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충원하려 것으로, 2019년도에 퇴직예정인 10명 중 7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나머지 3명은 외부 전문경력자(임기제)로 충원될 예정임.

〈서울시 전문경력관 현황〉

▶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1%이상	1%이내

▶ 일반직공무원 정원('19.1월 현재) : 10,451명 (전문경력관 책정가능인원 : 104명)

- 동물사육사로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전공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충원하게 되므로 사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7) 인건비의 증감

-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50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38억 1천 1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소요 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합계	3,811,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24명) : +2,011,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2) : 103,029 × 2명 = 206,058</li> <li>▷ 6급(+10) : 84,897 × 10명 = 848,970</li> <li>▷ 7급(+10) : 72,270 × 10명 = 722,700</li> <li>▷ 8급(△5) : 54,157 × △5명 = △270,785</li> <li>▷ 나군(+1) : 84,206 × 1명 = 84,206</li> <li>▷ 다군(+6) : 70,007 × 6명 = 420,042</li> </ul> </li> <li>○ 연구직(+11명) : +832,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사(+11) : 75,643 × 11명 = 832,073</li> </ul> </li> <li>○ 교육공무원(+15명) : +967,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교수(+15) : 64,526 × 15명 = 967,890</li> </ul> </li> </ul>	'19년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원 (기준인력 20,712명)이며, 서울시는 당초 1조 7,418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334억원이 여유가 있음.
- 2019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 190억원('19.1.1일 정원 개정 152억원,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38억원 포함)을 제외하면 여유 규모는 약 144억원으로 추정됨.
- 연내에 추가적인 인력증원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임.

#### (8) 장기적인 인력·정원관리 필요성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임.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올해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9~2023)」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85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2019년에는 전체 정원을 18,385명의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감 내역〉

구 분	계	순증(a-b)	증원(a)	감원(b)
합 계		580	850	△270
2018년	18,239	-	-	-
2019년	18,385	146	369	△223
2020년	18,534	149	159	△10
2021년	18,662	128	144	△16
2022년	18,756	94	96	△2
2023년	18,819	63	82	△19

- 그러나 이미 서울시 정원은 18,422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2019년 인력 운용계획을 초과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차이 폭은 더 커지게 될 것임.
- 매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력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수준의 인력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요구됨.

다. 종합의견

-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 증원을 요청하였음.

-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이를 정원배정 시 반영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먼저 제고해야 할 것임.
-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당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정원 배정을 우선하도록 원칙을 정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엄중하게 시행·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422명”을 “18,4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5명”을 “10,43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5명”을 “5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57명”을 “160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422”를 “18,472”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10,451”을 “10,475”로 한다.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10,049”를 “10,06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97”을 “104”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76”을 “387”로 하고, 연구사의 계란 중 “314”를 “325”로 한다.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505”를 “520”로 한다.

같은 표 교수 등의 계란 중 “435”를 “450”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대공원 5급 이하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8,42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0,405명</u></p> <p>2. (생략)</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505명</u></p> <p>4. (생략)</p> <p>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u>157명</u></p> <p><b>【별표 3】</b>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8,472명</u> ----- -----</p> <p>1. ----- -----</p> <p><u>10,437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 -----<u>520명</u></p> <p>4. (현행과 같음)</p> <p>5. -----<u>160명</u></p> <p><b>【별표 3】</b>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합 의 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8,4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45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42</td> <td>147</td> <td>16</td> <td>8</td> <td>67</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8,42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51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처</th> <th>직 속 기관</th> <th>사 업 소</th> <th>합 의 제 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8,47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0,47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td> <td>7</td> <td>6</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2·3급</td> <td>23</td> <td>18</td> <td></td> <td>1</td> <td>3</td> <td>1</td> </tr> <tr> <td>3급</td> <td>18</td> <td>8</td> <td></td> <td>1</td> <td>9</td> <td></td> </tr> <tr> <td>3·4급</td> <td>5</td> <td>5</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242</td> <td>147</td> <td>16</td> <td>8</td> <td>67</td> <td>4</td> </tr> <tr> <td>4·5급</td> <td>10</td> <td>1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8,47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75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8,42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51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관	사 업 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18,472																																																																																																																																												
정무직 계	2																																																																																																																																												
일반직 계	10,475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8	8		1	9																																																																																																																																								
3·4급	5	5																																																																																																																																											
4급	242	147	16	8	67	4																																																																																																																																							
4·5급	10	10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5급이하 소계	10,049						5급이하 소계	10,066					
전문경력관 소계	97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 계	37						별정직 계	37					
4급상당	5	3	2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 계	376						연구직 계	387					
연구관	62	5		34	23		연구관	62	5		34	23	
연구사	314						연구사	325					
지도직 계	24						지도직 계	24					
소방공무원 계	7,027						소방공무원 계	7,027					
소방준감	5	4		1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992						소방령 이하 계	6,992					
교육공무원 계	505						교육공무원 계	520					
총 장	1						총 장	1					
교수 등	435						교수 등	450					
조 교	69						조 교	69					